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별지 제13호서식] <2025. 01. 01. 개정>

사전고지서 예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시(도) ○○○시 ○○로 000(○○동 00-0)
담당자 : ○○○ (000-000-000)



사전고지서 재증

※타인수령시 본인에게 전달해주세요.



○○○시(도) ○○○시(구) ○○○로(길) 000
(○○음(면동) , ○○○○)

홍원동

000-000

||||| ||||| ||||| ||||| ||||| ||||| |||||

부과내역
1. 위반일시: 0000년00월00일 00:00
2. 위반장소: ○○○영입소 고속도로 ○○○선(○○○) ○○○방향
3. 위반내용: 통행량 : 4.22 톤 초과
4. 위반차량: ○○가○○○○

산출근거
1. 적용 법령: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106조, 별표7
2. 과태료 금액: (별표7, 총중 5톤미만, 축중 2톤미만 초과운행-1회) 과태료 금 500,000원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
◆ 가상계과안내:농협은행 000-0000-0000-000
• 예금주: "국토-납부자"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납부자	홍원동	실명번호	000000-1*****
주소	(000-000) ○○○시(도) ○○○시(구) ○○○로(길) 000 (○○음(면동) , ○○○○)		

세목	납기내	비고
	2014년 00월 00일	
과태료	400,000원	* 납기후 수납불가
합계금액	400,000원	

위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신용협동조합, 위금액을 정지 할수 합니다.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홍원동 (000-000-0000)

출발일자 : 2014년 00월 00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경수관



년 월 일



안내판공
④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뱅킹 납부시 본인의 공인인 증서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④ 카드납부는 인터넷지보 (www.giro.or.kr)에서 납부할수 있습니다.
④ 사전고지서는 20%감경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20일의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감경해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기관용)

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회계년도	2014	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도로교통	소관	국토교통부
납부자	홍원동		실명번호	000000-1*****	

금융기관	정수판제과	세목(563)	납기내	비고
			2014년 00월 00일	
001	902035-1	과태료	400,000원	* 납기후 수납불가
합계금액			400,000원	

위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홍원동 (000-000-0000)

출발일자 : 2014년 00월 00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경수관



본 예제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여건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서, 발부일은 일수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 이내에 사전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귀하께서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위반행위가 제3자에 의해 기인된 사실(차량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화물적재 관리의무 위반, 화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운행제한 위반 지시·요구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절차상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귀하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규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산출근거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은 금액(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상의 납기내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귀하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태료의 감경은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 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마. 미성년자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하께서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때에는 과태료에 대한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과태료의 강제 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체납 등의 정보 제공, 관허사업의 제한, 감치(監置) 등의 조치가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이 허가받은 사항(총중량, 축하중, 폭, 높이, 길이)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도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도로법」 제1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70	100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80	120	160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50	220	300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30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50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100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